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안(의안번호 제1061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1. 정부안 ····· 1

Ⅱ. 총괄검토 ····· 5

1. 추진배경 ····· 5
2. 주요내용 ····· 8
3. 총괄 검토의견 ····· 12

Ⅲ. 주요 내용별 검토 ····· 26

1. ‘상속취득재산’ 용어 정의 신설 및 과세방식 전환 ····· 26
2. 상속세 과세대상 정비 ····· 28
3. 상속세 과세관할 보완 ····· 31
4. 연대납세의무 축소 ····· 33
5. 간주상속재산의 과세방식 정비 ····· 37
6.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 조정 ····· 39
7. 추정상속재산 제도 정비 ····· 43
8. 인적공제(배우자공제 제외) 제도 개편 ····· 47

9. 배우자공제 제도 개편 ····· 56

10.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 ····· 59

11.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방식 개편 ····· 62

Ⅰ.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1061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5. 5. 28.

(3) 회 부 일 : 2025. 5. 29.

나. 제안이유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방식을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안 제3조)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와 피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속세 납부의무자 변경(안 제3조의2)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되,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다른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2)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해당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다.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안 제10조의2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의 상속취득재산에 포함하도록 함.

라.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에 따른 상속공제 개편(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현행 제18조 및

제21조 삭제)

1) 상속세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함.

2)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은 5억원, 그 외의 상속인은 2억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수유자는 5천만원, 그 외의 수유자는 1천만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도록 함.

마. 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안 제27조의2 신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이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속인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기한 신설(안 제67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되,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

등 및 「민법」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Ⅱ. 총괄검토

1. 추진배경

□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래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거 호주제 및 장자 상속 관습 등의 사회상과 세무행정이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용이한 세무행정 편의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별 세부담이 각자의 상속재산과 비례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오늘날 가족 구성원 간 상속재산의 공평한 배분 문화와 함께 관련 민법상 제도[1)]가 정비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 및 IT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부동산거래 신고제 시행 등으로 과세자료 수집이 용이한 세무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기존 유산세 방식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유산취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 민법상 '79년 유류분제도 도입, '91년 호주상속자 상속분 가산제도와 법정상속분 남녀차별 폐지, '08년 호주제 폐지 등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의 장단점 비교[2)]]

구분	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개 념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 과세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 기준 과세
도입근거	피상속인 소득세 과세시 경감분, 미실현소득 등 미과세분을 청산하는 기능에 부합	상속인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통해 응능부담 원칙 구현 가능
유산분할 촉진효과	낮음(촉진 유인이 없음)	높음(다수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수록 세부담 감소)
상속인별 맞춤공제	불가능(모든 상속인에 공제효과 분산)	가능(상속인별 맞춤공제로 운영)
조세회피 소지	낮음(분할과 무관하게 세액 결정)	높음(분할 통해 세액 감소 가능)
행정비용	낮음(피상속인의 유산만 조사)	높음(상속인별 취득자산 파악 필요)

□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를 제외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를 채택 중으로, OECD[3)]와 IMF[4)]는 보고서에서 수증자(상속을 받은 사람) 기준의 유산취득세(recipient-based inheritance tax)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equity)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2) 삼일인포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43p., 이세진, 김준헌.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5.28. 재인용 참조

3)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1.5.」
"Inheritance tax may be more equitable than estate tax …(중략) may encourage the division of estates and further reduce concentrations of wealth"

4) IMF, 「How to tax wealth, '24.5.」
"In terms of equity outcomes, an inheritance tax is preferable to an estate tax, because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wealth inequality after the transfer"

[유산세, 유산취득세 채택 국가]

유산세 채택 국가(4개국)	유산취득세 채택 국가(20개국)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 국회에서는 2020년 정기회 세법 심사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상속세율 인하 등이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5]을 채택하였음.

이와 같은 상속 문화·제도의 변경, 조세인프라의 확충, 국제적 추세 및 국회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전담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여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해왔음.

기획재정부는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거쳐,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25년 3월)하였고, 입법예고('25. 3. 19. ~ 4. 28.) 및 공청회('25. 4. 4.)를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5. 5.)하였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05952호)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2. 주요내용

□ 개정안은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면서,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공제제도 등을 유산취득세 방식에 맞추어 조정·정비하고,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임.

개정안 주요내용[6)]

가. 과세방식 전환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과세방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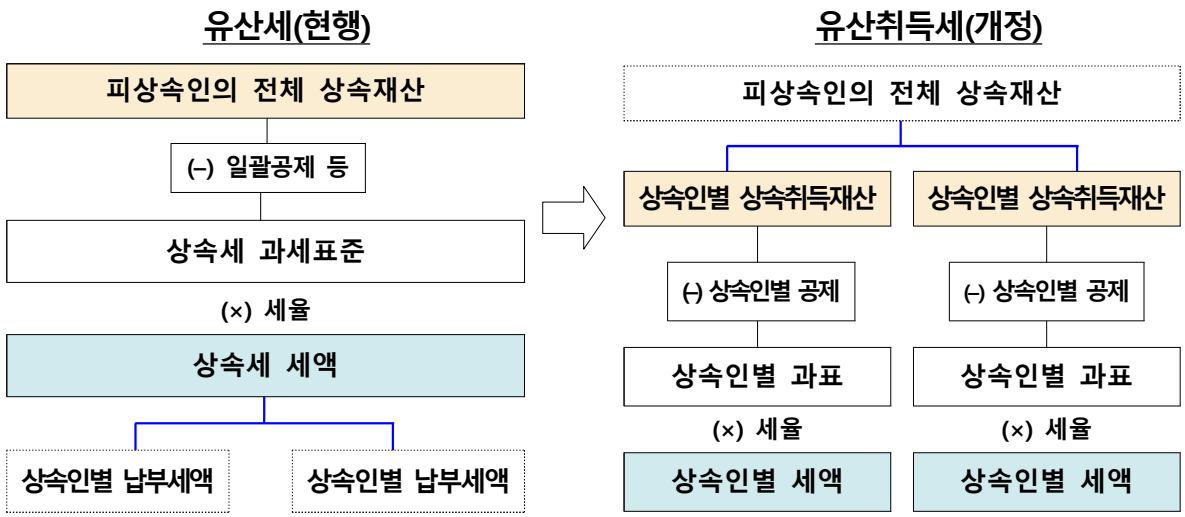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2025. 3.) 참조

나. 연대납세의무 축소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간 연대납세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다. 제3자 증여 합산 배제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개정)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제3자 증여는 비합산

구 분	현 행	개 정
상속인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수유자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그 외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불필요(증여세 부과로 종결)

라. 인적공제 제도 개편

(현행)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총 5억원) 적용

(개정)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공제방식 및 공제액 조정]

<현 행>

일괄공제	or	기초공제	+	추가공제
5억원		2억원		다음의 합계액 ㅇ(자녀) 1인당 5천만원 ㅇ(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ㅇ(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ㅇ(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연로자공제 동시적용 불가

<개 정>

	기본공제	+	추가공제
상속인	ㅇ(직계존비속*) 5억원 * 10억원(인적공제 최저한)까지 추가 가능 ㅇ(그 외) 2억원		다음의 합계액 ㅇ(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ㅇ(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ㅇ(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적용 불가
수유자	ㅇ(직계존비속) 5천만원 ㅇ(기타 친족*)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마. 배우자 공제한도 정비

(현행) 최저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 공제, 최대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개정) 최저한도: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최대한도: 현행과 같음

바.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개정) 현행 공제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사.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신설) 우회상속 시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만큼 과세

아.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 정비

(현행)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상속세 과세

(개정)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3. 총괄 검토의견

□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 보다 조세평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방식임.

응능부담의 원칙(應能負擔의 原則, ability-to-pay principle)은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으로, 상속에 있어서는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현행 유산세 제도 하에서는 받은 유산이 동일해도 상속인 수, 제3자 증여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져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가령, 자녀 1인인 가구에서 상속재산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 5인인 가구에서 상속재산 50억원을 5인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각 자녀가 받은 유산은 10억원으로 동일하더라도 5인 가구의 자녀는 1인 가구의 자녀보다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7]하게 됨.

또한,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나 적

7) 두 경우 모두 공과금·채무,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어 상속재산이 과세가액과 동일하며, 다른 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었다고 가정, 자녀 1인 가구 상속세액 0.9억원(= (^{과세가액}10억원 - ^{일괄공제}5억원) × ^{세율}20% - ^{누진공제}0.1억원) vs. 자녀 5인 가구 1인당 상속세액 3.58억원(= (^{과세가액}50억원 - ^{일괄공제}5억원) × ^{세율}50% - ^{누진공제}4.6억원) ÷ 5인)

게 상속받는 사람이나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제3자에게 증여하지 않은 경우와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형평이 발생함.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 취득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제3자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은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도록 개편하여 응능부담원칙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음.

둘째,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각 상속인의 형평에 맞는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현행 유산세 제도하에서는 일괄공제가 주로 적용되어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을 고려한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4년도 인적공제 적용 건 수 비교]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적용
19,805건(93.4%)	1,388건(6.5%)

또한, 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되더라도 공제액을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과세체계상 장애인, 고령자 등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들도 상속 지분만큼 해당 공제효과를 함께 향유하게 되는 반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온전히 공제효과를 적용받을 수 없어 제도취지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개정안은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함으로써 기타 인적공제의 효과가 온전히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여 각 상속인의 형평에 맞는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셋째,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 적정화에 일정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2000년 이후 세율 및 일괄공제 제도 등의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그간 물가 변동,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소비자 물가지수	63.151	74.413	86.373	94.861	100	114.18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주택 매매가격지수]

구분	2000.1	2005.1	2010.1	2015.1	2021.6	2025.1
종합주택	46.0	60.8	76.4	84.9	100.0	96.2
아파트	35.8	55.2	70.8	82.3	100.0	93.4

*종합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6월=100 기준

[전체 국세 대비 상속세 비중 추이(수납기준)]

(단위: 조)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국 세(A)	92.9	127.5	177.7	217.9	285.5	336.5
상속세(B)	0.4	0.7	1.2	1.9	3.9	9.6
비중(=B/A)	0.48%	0.55%	0.68%	0.89%	1.37%	2.87%

자료: e-나라지표, 국세통계연보

특히, 2024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인원은 2000년도 과세인원 1,389명에 비하여 15배 가량 증가한 21,193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중 5.9%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

(단위: 명)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전체 피상속인(A)	211,619	227,004	325,045	324,349	351,648	358,979
과세대상(B)	1,389	1,816	4,547	6,592	10,181	21,193
과세미달(=A-B)	210,230	225,188	320,498	317,757	341,467	337,786
과세대상 인원 비율(=B/A)	0.7%	0.8%	1.4%	2.0%	2.9%	5.9%

자료: 국세통계연보

이에 따라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부담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8].

개정안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각 상속인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8) 동아일보, "상속세 대상 9배로 급증, 과세기준은 23년째 그대로… 개편 시급" (2023. 11. 15.)
중앙일보, "상속세,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2024. 4. 20.)
mbc뉴스 "최상목,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단순 부자 감세 아냐" (2024. 7. 25.)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해 높은 누진세율에 직면하는 상속재산 가액을 낮춤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행태를 유도할 수 있다면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넷째, 이론적 측면에서 유산취득세는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망자(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성격이 있는 유산세에 비하여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이전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점에서는 그 본질이 같고, 상속세 과세 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는 밀접한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일관된 과세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사망 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는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관점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즉 수증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점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안은 분할을 통한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액 확대 및 인적공제

최저한의 설정으로 적지 않은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분할을 통한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해 현행보다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현행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10%~50% 범위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되는데, 개정안은 상속인·수유자별 취득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됨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해 상속인·수유자별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고 현행보다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받을 수 있음.

(다자녀 가구 공제액 확대) 다자녀 가구의 공제액이 확대됨.

현행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차감하는 방식이나, 개정안은 자녀 별로 5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자녀 수에 비례하여 전체 공제액 규모는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현재 활용되지 않는 기타 인적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 【사례】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현 행	개 정
자녀A	14세	일괄공제 5억원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0.5억원* * 미성년자 공제 5년 x 0.1억원
자녀B	9세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1억원* * 미성년자 공제 10년 x 0.1억원
합계		5억원	11.5억원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반면, 1인 자녀 가구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음.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방식의 개편에 따라 상속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정을 고려하여 현행의 면세점 수준인 10억원[9]까지는 과세

9)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되지 않도록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증가하지는 아니함.

◆ 【사례】 배우자+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

	실제 상속재산	공제액	
		현 행	개 정
배우자	3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억원
자녀A	7억원		기본공제 5억원 + 최저한 추가 공제 2억원*
합계	10억원	10억원	10억원

* 인적공제 합계액 8억원(= 배우자공제 3억원 + 기본공제(자녀) 5억원) < 10억원

→ 미달액인 2억원(=10억원-8억원)을 자녀A에게 추가 공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재산의 분산 정도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10].

일정 가정[11]하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사례의 경우 실효세율 변화가 최대 △4.6%p이나, 배우자와 자녀 4명인 사례의 경우 실효세율 변화가 최대 △16.5%p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임.

[실효세율 변화]

10) 최천규.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2025.3.25.

11) 분석 가정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1~ 4명
- 상속액: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
- 상속과세자산: 10~500억원
- 상속공제: (현행)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30억원), 그 이외 공제 적용 없음
  (개편안) 자녀공제(5억원), 배우자공제(10~30억원), 그 이외 공제 적용 없음
- 세율: 현행 세율적용
- 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전)

[배우자 + 자녀1명]	[배우자 + 자녀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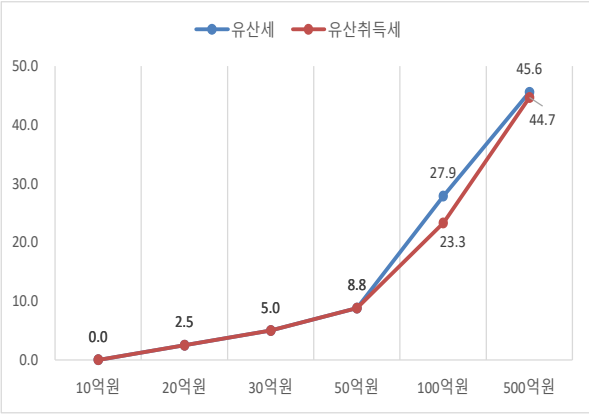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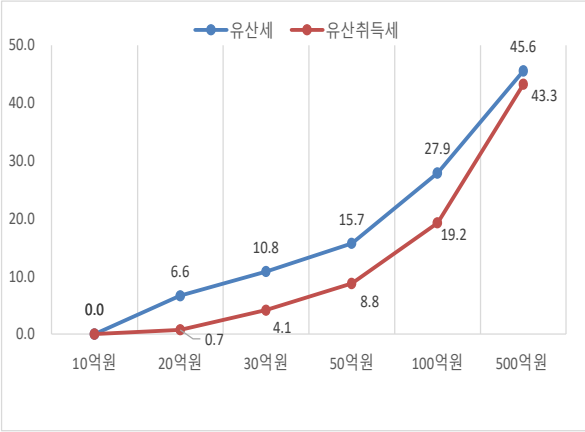
[배우자 + 자녀3명]	[배우자 + 자녀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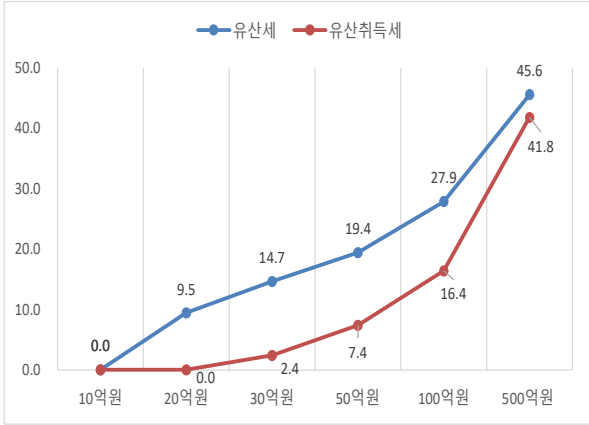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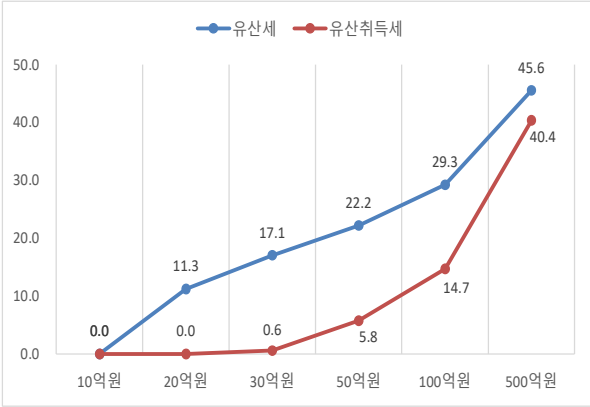

구체적인 세수감소분에 대하여 정부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함에 따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분할 효과는 상속인·수유자의 수 및 상속재산 분할 양태에 따라 달라지나,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들의 상속재산 분할 행태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워 세수효과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는 설명임.

둘째, 이와 같이 세수중립적이지 않은 개편안은 상속세의 부의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평균 -669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평균 2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산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12]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4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전체	31,572	100.0	44,894	100.0
순자산 1분위	-666	-0.2	-669	-0.1
순자산 2분위	2,565	0.8	3,067	0.7
순자산 3분위	6,187	2.0	7,689	1.7
순자산 4분위	10,622	3.4	13,365	3.0
순자산 5분위	15,912	5.0	20,185	4.5
순자산 6분위	22,050	7.0	28,280	6.3
순자산 7분위	29,536	9.4	38,803	8.6
순자산 8분위	40,131	12.7	55,032	12.3
순자산 9분위	57,393	18.2	83,629	18.6
순자산 10분위	131,916	41.8	199,516	44.4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2)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순자산 지니계수	0.584	0.588	0.597	0.602	0.603	0.606	0.605	0.612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수중립성이 결여된 상속세 개편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 정의인 부의 재분배 기능을 훼손하여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임[13].

셋째, 유산세 체계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 생전에 과세되지 않은 자본이득세 등 소득세의 일부 불완전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는데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되면서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해 저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등으로 소득세의 불완전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입법정책적으로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조세회피에 대한 개정안의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인·수유자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세금이 부

13) 참여연대 보도자료. 세수감소 초래할 유산취득세 전환은 초부자 감세에 불과. 2025.3.12.

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분할에 따라 보다 많은 기초공제액과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유산분할을 가장하는 허위 신고 등 조세 회피 유인이 커질 수 있음.

가령,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위·며느리, 손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유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로 특수관계인이 유증받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분할에 따른 낮은 상속세율 적용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14]을 통한 우회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유증・증여(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액만큼 과세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 증여는 이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포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특히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 경제생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증여가 가능하여 과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

---

14)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후략)

어질 수 있음.

또한, 상속인과 수유자 외의 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산취득세의 취지인 응능부담원칙에는 보다 부합하지만, 이를 통한 조세회피도 가능해짐.

가령, 피상속인이 생전(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손주나 사위, 며느리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현행에 따르면 이들이 수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이 유증, 사인증여 등을 받지 않아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 과세 될 수 없게 되어 이들에게 사전 분산증여함으로써 고율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임.

둘째, 개정안은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15]이 있음.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수유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재산액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담세력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이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15) 최명근, "상속과세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박훈,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15

또한,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적용 규정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비거주자 상속인(자녀)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 규정으로 인해 증여세 과세가 면제되는 조세회피가 가능해짐.

셋째, 자산이전 시점 간 세부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증여공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상속세 부담 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제상 유리점이 커진 상속이 증가하고 증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

상속세 부담 완화 수준에 맞추어 증여세 부담도 공제액 확대 등을 통해 완화하여 자산이전 시점 간 세부담 차이를 조정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참고로, 현행법상[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의

---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도입되어 혼인일 및 자녀의 출생・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속취득재산’ 용어 정의 신설 및 과세방식 전환

현 행	개 정 안
□ 정의(제2조)	□ 용어 신설
○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상속취득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취득재산의 가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중 승계분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제25조)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 개정안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기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정의된 ‘상속재산’과 별개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조[17]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반영한 것임.

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피상속인' 중심의 상속재산의 개념과는 별개로 '상속인·수유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용어가 필요한 바, 개정안은 이를 '상속취득재산'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려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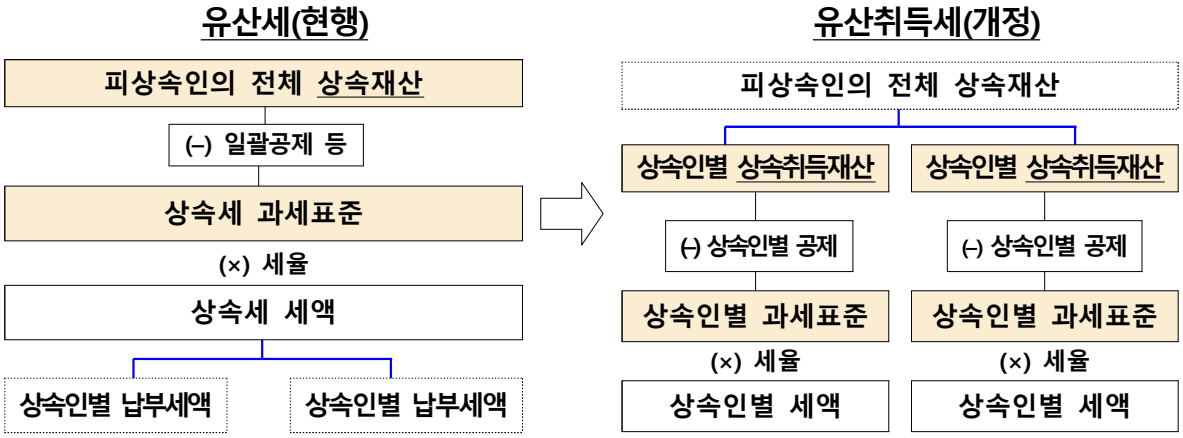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과세대상 정비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과세대상(제3조) ○ 피상속인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국내 소재 상속재산	□ 상속인·수유자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고려 ○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 ○ 상속인·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 ○ 거주자 범위에서 단기 외국인 거주자(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외

□ 개정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현행법[18]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이 거주자[19]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한정한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피상속인 및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인·수유자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외국인거주자")는 거주자로 보지 않고 비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 현 행 >

피상속인 / 상속인 수유자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국내외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비거주자	국내외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

< 개 정 >

피상속인 / 상속인 수유자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국내외 상속재산	국내외 상속재산
비거주자*	국내외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 단기외국인거주자 포함

□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수유자의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수유자가 비거주자면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20]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됨.

참고로, 비거주자인 상속인·수유자 소재 국가에서 상속세를 과세함으로 인한 이중 과세 문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21]를 적용하

20) 가령,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상속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 해소가 가능함.

□ 다음으로, 과세대상 판단 시 단기외국인거주자를 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상속재산은 일생동안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체류한 외국인까지 거주자로 보아 그 외국인의 본국에 있는 재산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가령, 국내에 취업하여 단기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인력이 사망 시점에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그 외국인의 자녀가 상속받는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이 국내 취업을 꺼리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3. 상속세 과세관할 보완

현 행	개 정 안
□ 과세관할(제6조)	□ 과세관할 보완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 혹은 거소지)가 국내인 경우: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장	○ (현행과 같음)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 세무서장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국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 <u>국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세무서장</u>

□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관할을 피상속인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는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는 국내 상속재산 유무에 따라 국내 상속재산이 있으면 현행과 같이 상속재산 소재지로 하되, 국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 주소지의 세무서장으로 하려는 것임.

□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소재지가 아닌 각 상속인·수유자 소재 세무서장이 과세를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소재 복수의 세무서가 동일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재산평가 등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우회상속 등 조세회피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상속세 과세관할을 피상속인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는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효율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다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를 살펴보면, 현행법[22]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 소재 세무서장이 관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과세대상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국내외 소재 상속재산이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이 없고 국외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과세관할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세무서장을 과세관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관할 공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4. 연대납세의무 축소

현 행	개 정 안
□ 연대납세의무(제3조의2③) ○ 모든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 제한적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 요건 -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이 상속세액보다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의무 요건 -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로 그 상속취득재산이 귀속되는 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현재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연대납세의무를 ① 거소지 불명, 납부능력 없음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국내 상속취득재산이 상속세액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하도록 하고, ②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23]은 상속세에 대하여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수유자에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원래,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에 대한 세금을 공유자에게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세기본법」[24]은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실질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시[25]한 바 있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 하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연대

---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4)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5)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 2222 판결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하 생략)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각자가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하에서 각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은 공유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타당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에 부과되던 연대납세의무를 ① 거소지 불명, 납부능력 없음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 상속인의 국내 상속취득재산이 상속세액보다 적은 경우 ②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먼저, ②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경우는 조세회피를 위해 신고서류, 등기 등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상속재산(공유물)의 분할 또한 애초에 상속인간 통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민법」 제108조[26]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있음.

□ 다만, ①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비거주자 상속인의 국내 상속취득재산이 상속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부분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하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견해[27]가 있음.

---

26)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7) 최명근, “상속과세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박훈,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15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수유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재산액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담세력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이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또한,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적용 규정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비거주자 상속인(자녀)의 국내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 규정으로 인해 증여세 과세가 면제되는 조세회피가 가능해짐.

5. 간주상속재산의 과세방식 정비

현 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8조)	□ 보험금의 상속취득재산 간주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9조)	□ 신탁재산의 상속취득재산 간주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제10조)	□ 퇴직금 등의 상속취득재산 간주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

□ 개정안은 현행의 간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지금 등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취득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현행법[28]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금, 신탁재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

산, 퇴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이전되는 재산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은 피상속인의 보험 납입금 및 재산 신탁에 따른 수익자, 미지급된 퇴직금 등이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임.

□ 유산취득세 과세방식하에서도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10. (생 략)

6.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 조정

현 행	개정안
□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산(제13조)	□ 상속세 납부의무 조정
○ 합산대상: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가액	○ 합산대상: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수유자: 상소개시일 전 5년 이내	- 수유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인·수유자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상속인·수유자외: 합산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29]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상속인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나 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누진과세 적용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상속인외 수유자에 대하여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도록 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구분	현 행	개 정
상속인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수유자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그 외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불필요(증여세 부과로 종결)

참고로, 현행법[30]상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을 의미[31]하고, 수유자는 유증, 사인증여, 신탁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첫째, 상속인과 수유자 외의 자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산취득세의 취지인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함.

---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1) 삼일인포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128p. 2024.3

현재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의 과세가액이 증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음.

기업 경영주가 생전 임직원에게 증여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 상간녀에게 사전 증여한 부동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남아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이 거론됨[32].

가령, 과거 쓰리세븐(777)의 고 김형주 회장이 2006년 크레아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크레아젠 주식을 임직원등에게 증여하였다가 추후 유족들이 사전증여재산인 크레아젠 주식과 관련한 상속세 1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상속세 탈세 목적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배려와 보상 등 선의의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까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음.

둘째,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경우 합산 대상기간을 10년으로 상속인과 일치시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수유자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므로 상속인과 같은 수준으로 누진과세 회피 방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상속인과 수유자 외의 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대

32) 한경. 상속세 때문에... 세계 1위 한국 회사에서 일어난 일[도정환의 상속대전], 2023. 1. .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277563Q

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산취득세의 취지인 응능부담원칙에는 보다 부합하지만, 이를 통한 조세회피도 가능해지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령, 피상속인이 생전(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손주나 사위, 며느리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현행에 따르면 이들이 수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이 유증, 사인증여 등을 받지 않아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 과세 될 수 없게 되어 이들에게 사전 분산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임.

7. 추정상속재산 제도 정비

현 행	개정안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제15조)	□ 추정상속재산 가액의 산입방법 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개정안은 ① 재산의 처분·인출, 금융회사 등 채무가 일정 이상(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② 변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의 경우는 해당 채무를 상속취득재산에서 차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33]은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각각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피상속인이 사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여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

---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감 또는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상속인은 처분재산이나 인출금액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고, 상속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유산세방식에서는 이러한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면 되는 것이지만,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을 누구의 과세가액에 얼마만큼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재산의 처분·인출, 금융회사 등 채무 중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② 변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의 경우는 해당 채무를 상속취득재산에서 차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의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하에서도 유지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이해됨.

특히, 귀속이 불분명한 처분 재산 등에 대하여 「민법」[34]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가액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부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 등을 통하여 그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현금화된 재산의 귀속처

---

3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부당하게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과세관청이 배분하는 방식은 개별 상속인별로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과,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분할 과정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상속인 중 추정상속재산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입된 추정상속재산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쟁송비용, 세무행정 부담의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인적공제(배우자공제 제외) 제도 개편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제18조, 제21조)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의 개별 상속취득재산에서 다음의 인적공제액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 직계존비속: 5억원 - 기타: 2억원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 직계존비속 등*: 5천만원 *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등 포함 - 기타 친족*: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기타 인적공제(제20조) ○ (자녀) 1명당 5천만원 ○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원 ○ (연로자) 1명당 5천만원	□ 상속인·수유자별 추가공제 적용 ○ 기본공제로 통합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 (적용요건) 모든 상속인 및 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한 경우 ○ (적용대상)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인 상속인 ○ (최저한 추가공제액) 그 미달한 금액

□ 개정안은 유산세방식에 적용되던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상속인·수유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현행법[35] 제18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한 모든 상속에 대하여 2억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를 두고, 제20조는 배우자가 아닌 자의 인적공제(이하 "기타 인적공제"라 한다)를 규정하며, 제21조는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 결정방식으로서 일괄공제금액과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하여 5천만원씩 공제하는 자녀공제,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36]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에 대하여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공제하는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기대여명(期待餘命)[37]의

---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36)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을 말함.

37) "기대여명(期待餘命)"은 특정연도에 특정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함(통계청 통계표준용어)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장애인공제를 두고 있음.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 개요]

구분	공제금액
① 기초공제	2억원 (비거주자에게도 적용)
②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잔여연수 연로자(65세 이상)공제: 5,000만원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통계청고시) 연수
일괄공제	①기초공제와 ②기타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미만 시 5억원 일괄공제

개정안은 유산세방식에 적용되던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상속인·수유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현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 기본공제로 흡수하면서 상속인 혹은 수유자에 대하여 각각 피상속인과의 관계(근접성)에 따라 차등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하되, 현행 기타 인적공제 항목인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 공제 수준[38]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38) 배우자공제 최저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현 행>

일괄공제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5억원		2억원		다음의 합계액 ㅇ(자녀) 1인당 5천만원 ㅇ(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ㅇ(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ㅇ(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연로자공제 동시적용 불가

<개 정>

	기본공제	+	추가공제
상속인	ㅇ(직계존비속*) 5억원 * 10억원(인적공제 최저한)까지 추가 가능 ㅇ(그 외) 2억원		다음의 합계액 ㅇ(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ㅇ(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ㅇ(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적용 불가
수유자	ㅇ(직계존비속) 5천만원 ㅇ(기타 친족*)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각 상속인의 형평에 맞는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현행 유산세 제도하에서는 일괄공제가 주로 적용되어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을 고려한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4년도 인적공제 적용 건 수 비교]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적용
19,805건(93.4%)	1,388건(6.5%)

또한, 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되더라도 공제액을 피상속인의 전체 유

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과세체계상 장애인, 고령자 등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들도 상속 지분만큼 해당 공제효과를 함께 향유하게 되는 반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온전히 공제효과를 적용받을 수 없어 제도취지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개정안은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추가로 차감함으로써 기타 인적공제의 효과가 온전히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여 각 상속인의 형평에 맞는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둘째, 피상속인과의 관계(근접성)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하는 부분은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수유자를 통한 위장분할 유인을 낮추는 효과도 있음.

현행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일괄공제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상속인과 수유자를 구분하고, 피상속인과의 관계(근접성)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근접성에 따른 차등 공제는 피상속인과 가까운 상속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 받고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후 생계유지를 보다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 또한 클 수 있는 점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상속세를 경감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통해 위장분할을 하더라도 수유자는 상속공제를 상속인만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장분할을 할 유인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음.

셋째, 상속인 수에 따라 공제규모가 달라져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현행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대다수에게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공제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한 자녀의 경우 5억원, 두 자녀의 경우 10억원, 네 자녀의 경우 20억원의 공제 효과가 발생함.

[참고: 2023년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39]]

구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가구 수	1,986,795	2,168,505	398,258	32,582	4,601
비율(%)	43.28	47.24	8.68	0.71	0.1

자료: 통계청

넷째, 개정안은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증가하지는 아니하도록 하여 제도개편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의 면세점 수준인 10억원(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도록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

39) 집계대상은 만18세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이며 자녀수(2자녀~5자녀이상)에는 함께 거주하는 만19세이상 자녀도 포함됨

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액 확대 및 인적공제 최저한의 설정은 상속재산 분할을 통한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과 함께 적지 않은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재산의 분산 정도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40].

일정 가정[41]하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사례의 경우 실효세율 변화가 최대 △4.6%p이나, 배우자와 자녀 4명인 사례의 경우 실효세율 변화가 최대 △16.5%p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임.

---

40) 최천규.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2025.3.25.

41)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1~ 4명 • 상속액: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
• 상속과세자산: 10~500억원
• 상속공제: (현행)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30억원), 그 이외 공제 적용 없음
(개편안) 자녀공제(5억원), 배우자공제(10~30억원), 그 이외 공제 적용 없음
• 세율: 현행 세율적용 • 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전)

[실효세율 변화]

[배우자 + 자녀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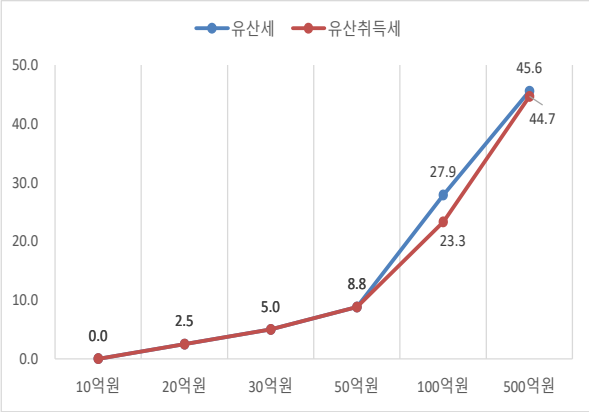

[배우자 + 자녀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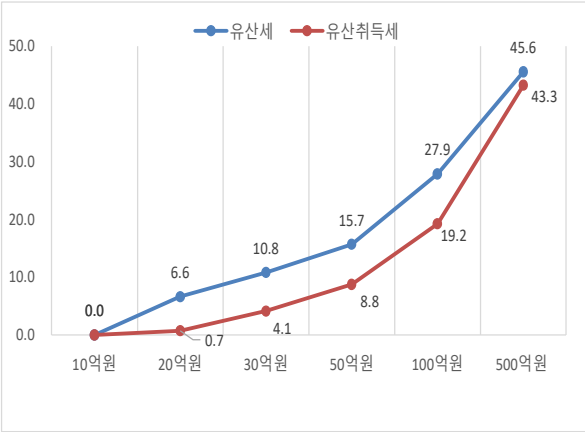

[배우자 + 자녀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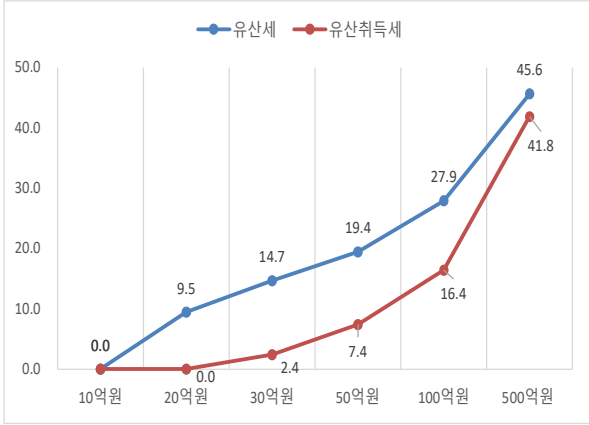

[배우자 + 자녀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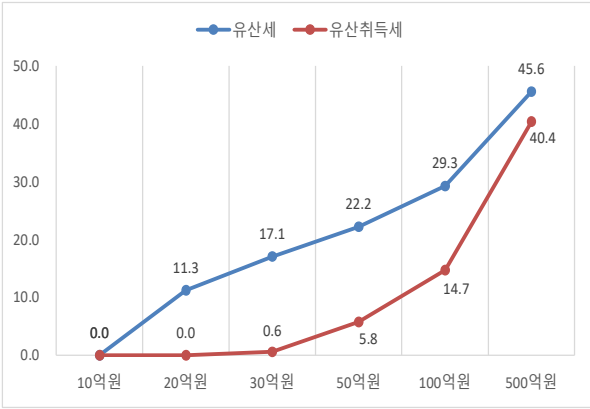

둘째, 부를 자녀세대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을 고려할 수 있는데, 상속공제 수준 만큼 증여공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상속세 부담 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제상 유리점이 커진 상속이 증가하고 증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

상속세 부담 완화 수준에 맞추어 증여세 부담도 공제액 확대 등을 통해 완화하여 자산이전 시점 간 세부담 차이를 조정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내수 활성

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참고로, 현행법상[4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도입되어 혼인일 및 자녀의 출생·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함.

셋째, 우리위원회에 상속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43]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3) 김은혜의원안 2024. 7. 16. 발의(의안번호 1775), 안도걸의원안 2024. 8. 23. 발의(의안번호 3143), 권성동의원안 2024. 9. 23. 발의(의안번호 4177), 박성준의원안 2024. 11. 5. 발의(의안번호 5246), 이종욱의원안 2024. 12. 26. 발의(의안번호 6950)

9. 배우자공제 제도 개편

현 행	개정안
□ 배우자공제(제19조)	□ 배우자공제 한도 등 조정
○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공제	○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
○ 공제한도: ①, ② 중 작은 금액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사전증여재산분 제외) - <신 설> ② 30억원	○ 공제한도: ①, ② 중 작은 금액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사전증여재산분 포함) - 다만,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으로 함 ② 30억원
○ 최소공제액: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더라도 공제	○ <삭 제>

□ 개정안은 배우자공제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공제 규정[44]을 삭제하면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의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45]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생 략)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
   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에서 30억원 혹은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이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수유자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10년 이내 증여 혹은 사후 상속받은 총 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46]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른 인적공제보다 비교적 높은 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배우자 간 부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 수평적 자산 이전으로 해당 상속재산은 추후 자녀 세대로 이전될 때 과세될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후 남아 있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 보장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임.

한편, 배우자공제의 최소공제액(법 제19조제4항[47]에 따른 공제를 말함)은 배우자가 실제 받는 상속가액과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산세 과세방식하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에 더하여 공제액을 추가로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상의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한 상속

---

46)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생 략)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가액을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는 유산취득세적 요소와 배우자의 실제 취득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유산세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음.

□ 개정안은 배우자 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의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하면서, 유산세 성격의 배우자공제의 최소공제액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현행 배우자공제의 최소공제액은 일괄공제와 함께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공제로 활용되어 배우자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만 공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배우자공제 제도와 유산취득세 취지에 부합함.

둘째, 현행은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낮아져 피상속인의 사후 남아있는 배우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최소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 한도와 무관하게 공제하도록 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음.

즉, 배우자는 최소한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부담 없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48]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48) 이상휘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71), 권영세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9015), 박충권의원안 2025. 3. 28. 발의(의안번호 9469), 최은석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6)

10.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 ○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만큼 상속세 추가 과세 ○ 요건 - 가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 대상: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우회상속인에게 증여 - 세액비교: ①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유증·증여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②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이 감소한 경우 ○ 납세의무: 우회상속인의 추가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해 특수관계인은 연대납세

□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①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이 ②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속인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

속인 혹은 수유자간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분할에 따라 보다 많은 공제액과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유산분할을 가장하는 허위 신고 등 조세 회피 유인이 커질 수 있음.

가령,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위·며느리, 손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속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로 특수관계인이 유증받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분할에 따른 낮은 상속세율 적용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49]을 통한 우회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유증・증여(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액만큼 과세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위장분할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개정안의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특수관계인 간 증여는 이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포착

---

4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특히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 경제생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증여가 가능하여 과세에 일정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참고로, 일본의 경우 우회상속을 통한 상속세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액을 정한 뒤 이를 실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11.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방식 개편

현 행	개정안
□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제3조의2②)	□ 영리법인의 범위 제한 및 납세의무자 확대 등 과세방식 개편
○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시 주주인 상속인·직계비속에게 상속세 납부의무 부과	○ 유증받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지배주주·친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납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10÷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납부액: 특정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등 각자의 지분율만큼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아 과세 ※한도: 지배주주등이 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액
○ 납세의무자: 영리법인의 주주·출자자	○ 납세의무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영리법인이 수유자일 것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일 것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 피상속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개정안은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을 개편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과세방식을 현행 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상속세 상당액을 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에서 법인의 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② 과세대상 영리법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

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자를 현행 '그 영리법인의 주주등인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서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법[50]은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해당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유증, 사인증여 등에 따라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면제됨[51]에 따라 높은 상속세율 대신 가족법인 등을 활용한 낮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마련된 것임.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0분의 50

[일반 내국법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100분의 24

구체적인 상속세 납부액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액에 대해 전체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에 유증된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서 영리법인에 유증된 상속재산의 10%를 뺀 금액에 대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출자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됨[52].

그런데, 유산세 과세방식 하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가 산정되므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영리법인에 유증된 금액의 다과(多寡)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만큼 상속인·수유자의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상속인·수유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세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법인이 유증등을 받은 이익을 각 상속인·수유자의 지분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 수증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받은 이익이 상속인·수유자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과세대상 영리법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자를 현행 '그 영리법인의 주주등인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서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서는 과세대상 영리법인의 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의도가 없이 법인에 유증한 경우도 과세될 수 있는 문제점과 납세의무자가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어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 친족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이와 같은 개편안은 과세방식, 과세대상 등이 현행법 제45조의5[53]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과 연계하여 상속 및 증여 간 과세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재산 이전시점에 따른 과세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문 의 처
02)6788-5161